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합102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현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섭

변론 종결2021. 3. 31.

판결 선고2021. 4.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9. 7. 22.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91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조성사업에 관한 도급계약

피고와 C은 공동수급체로서 2018. 2. 26. 동두천시와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579,4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공동수급운영협약

피고와 C은 2018. 4. 10.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제6조는 별지2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권리·의무 양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

C은 동두천시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 586,800,000원의 반환 채무에 대하여 2018. 7. 4. 원고와 피보험자 동두천시, 보험가입금액 608,981,040원, 보험기간 2018. 6. 12.부터 2019. 6. 24.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동두천시에 대한 보험금 지급

동두천시는 2018. 11. 26.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9. 3. 6. 동두천시에 보험금 594,010,6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100,309,433원을 회수하였다.

마. C에 대한 강제탈퇴 조치

피고는 2019. 4. 9. 동두천시에 'C이 기간 내에 하도급업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았고, 공동수급체로서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원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C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를 요청하였고, C은 2019. 7. 9. 공동수급체에서 강제 탈퇴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바.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1) 감리단의 검사를 통하여 C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액이 1,022,356,8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7. 18. 위 기성액에서 기수령액 510,197,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2,159,300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의 승인을 동두천시에 요청하였다.

2) 동두천시는 2019. 7. 22. 피고가 승인을 요청한 채권액 512,159,300원 중에서 채권가압류 금액 42,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9,919,300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

3) 위 469,919,300원 중 426,147,700원은 동두천시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43,771,600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는 2020. 1. 22.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정산금 27,326,000원을 공탁하였다.

사. 원고와 C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위 선급금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0. 14.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514).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로부터 469,919,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받아 그 중 426,147,700원은 하도급대금 직불에 사용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하였고, 나머지 43,771,600원은 직접 수령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9. 7. 22.자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469,919,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데,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양도담보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97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등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계약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의 일방적 행위일 뿐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보충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중 누군가가 공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공동수급체 상호 간에 공동수급자지위탈퇴와 시공권 등 포기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승인원, 일자보충권부여증서 등을 작성·날인한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호 교환한 사실, ② C이 약 8개월 동안 공사자금(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발주자인 동두천시에 C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를 요청하였고, C은 2019. 7. 9. 공동수급체에서 강제 탈퇴된 사실, ③ 피고는 제3채무자인 동두천시에 C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 승인을 요청하였고, 동두천시는 2019. 7. 22. 피고가 승인을 요청한 채권액 512,159,300원 중에서 채권가압류 금액 42,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9,919,300원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이 이 사건 협약 제6조에 따라 채권양도일자가 공란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수수한 것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즉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C이 피고에게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예약완결권 행사의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C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3)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2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69,919,300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은 2018. 4. 10.경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제3채무자인 동두천시가 2019. 7. 22.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는바, 동두천시가 2019. 7. 22.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한 것은 제3채무자의 일방적 행위일 뿐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희

판사오승희

판사임현화

별지